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가단5372529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김성규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우석, 윤대해, 이기정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2,319,571원 및 이 중 금 40,876,932원에 대하여 2022. 2 .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라고 한다)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벤츠 S-Class, 이하 '1차량'이라 한다)을 60개월간 월 리스로 2,669,100원(매월 20일)에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1차량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21. 2. 2.경 D로부터 위 1차량 리스계약을 승계하였다. 피고는 당시 F의 대표이사로 연대보증인(보증한도 최고액 149,110,684원)이 되었다.

나. 원고는 D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그랜드스타렉스, 이하 '2차량'이라 한다)을 48개월간 월 리스로 400,500원(매월 25일)에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2차량 리스계약'이라 한다, 1차량 및 2차량 리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는 2021. 1. 20. D로부터 2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승계하였다. 피고는 당시 ㈜F의 대표이사로 연대보증인(보증한도최고액 78,961,560원)이 되었다.

다. 1차량 및 2차량의 각 자동차리스 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리스 약관]

제21조(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에 금융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고객에게 서면으로 발생 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까지 고객이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고객이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3영업일(고객이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고객이 가계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제22조(중도해지에 따른 정산)

① 고객은 제21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23조의 규정 손해배상금 또는 제24조에 따른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규정손해배상금 및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의 부과 근거 및 관련 요율 등을 사전에 설명하기로 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규정손해배상금 및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의 부과 근거 및 관련 요율 등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또한 고객은 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수수료를 부담하며, 이외에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합니다.

⑨ 금융회사는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내역을 고객에게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4조(중도해지손해배상금)

① 운용리스의 경우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운용리스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약정한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제26조(반환자동차의 평가)

①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자동차 감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보험수리 경력 등)에는 고객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가치감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감가율의 합

제29조(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① 고객이 리스로 등 이 계약에 따라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연체일수를 산정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율과 연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③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중도해지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계약해지일 다음날부터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고객은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에게 자동차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에 반환기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한편넣기로 산정한 경과일수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반환기일 다음날 반환한 경우는 경과일수를 1일로 합니다.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 + (일리스료 × 반환지연금율)] × 경과일수

제33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라. F는 2021. 3. 29.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다. 마. 1차량은 2021. 12. 21.경, 2차량은 2021. 10. 21.경 원고 측에 각 반납 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음),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1) 1) 주위적 주장

1차량의 경우, 2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이 (주)G 측의 월 리스료 2기 연체로 인하여 해지됨으로써 자동차리스 약관 제33조와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1차량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었다.

2차량의 경우, 월 리스료 납기일인 2021. 10. 25. 및 2021. 11. 25.에 각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리스료 2회 연체가 되어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여 종료되었다.2)

따라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1차량 리스계약 해지

와 관련하여 연체리스료 및 연체조세, 연체료 총 29,223,589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2차량 리스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연체리스료, 연체료, 기존 법조치비용 총 13,095,98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 합의해지 된 것이라 하더라도 중도에 위 각 계약이 파기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항의 각 금액을 마찬가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의 리스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주채무자에게 그 주장과 같은 계약해지를 통보한 적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모두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2차량의 경우

살피건대, 갑 6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10. 21.경 원고 측에 2차량의 반납 의사를 밝힌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 측 직원을 통해 2차량을 반납 처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① 갑 6호증의 기재를 포함한 원고 제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반납 당시 어떠한 사유에 따른 반납인지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리스료 연체 해당 분은 10월(2021. 10. 25. 결제일) 및 11월(2021. 11. 25. 결제일)인데 이는 피고가 2차량을 반납한 이후의 결제 분에 관한 것인바, 리스료는 리스차량의 사용 및 계약 유지를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통상 차량이 반납되면 이로써 리스이용 관계는 종료된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일응 부합함에도 원고가 위 차량을 회수한 후에 리스계약이 특별히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3), ③ 월 리스료 2회 연체에 기한 해지는 자동차리스 약관 제21조 제4항에 의한 해지인데 아래 나.1)나)의 ④항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채무자에게 이 사건 각 차량 반납 전에 위 약관 제22조 제1항, 9항에 따른 사전 설명이나 정산내역 통지를 제대로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량 리스계약이 월 리스료 2회 연체로 해지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1차량의 경우

원고는 위와 같이 2차량이 월 리스료 2회 연체로 원고에 의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자동차리스 약관 제33조와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1차량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차량이 월리스료 2회 연체로 계약해지 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도에 파기된 이상 손해는 위 주위적 주장과 같이 여전히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 쌍방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해지 되었다면, 리스계약이 의사의 합치로 장래를 향하여 종료된다는 의미로서, 합의해지에 따른 최종 정산은 그 합의해지 당시 쌍방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고는 합의해지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자동차리스 약관(갑 제7호증의 1) 제21조에 정한 중도해지를 전제로 한 연체리스료, 중도반납수수료 등을 구하는바, 갑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합의해지임에도 중도해지 시에 부과되는 중도해지손해배상금, 경과리스료(반환지연금) 등의 부담을 (주)G이나 피고가 그대로 감수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가사 원고의 주장을 선행하여 피고가 위 약관 제21조 제1항에 의한 중도해지를 원고에게 통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을 청구하는 것4) 이라고 보더라도 을 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 위 약관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중도해지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2021. 12. 21.경 1차량을, 2021. 10. 21.경 2차량을 각 자진하여 반납 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와 같다. 그런데 리스차량이 리스기간 도중 리스사용자에 의해 자진 반납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자동차리스 약관 제21조 제1항에 의한 중도해지라고 선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리스사용자가 리스차량을 반납한다는 것은 통상 리스계약의 종료를 의미하지만, 그 종료 사유는 중도해지수수료 발생 등 일정한 불이익을 리스사용자가 감수하는 계약의 중도해지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 간의 경제적 필요성 및 합의에 따라 그와 같은 리스사용자의 불이익이 전제되지 않는 합의해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이 사건 각 리스계약상 주채무자는 (주)F였다가 위 회사가 2021. 3. 29.경 (주)G에 흡수합병되어 존속회사인 (주)G이 리스승계인로서 주채무자가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G의 대표이사나 위 계약에 관한 회사 측의 적법한 대리권자가 중도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상담내용(갑 6호증)을 검토해 보아도, 원고 측 담당 직원과 (주)G의 대표이사 H이 차량 반납 및 해당 리스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통화를 몇 차례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것만으로는 ㉡G이 자동차리스 약관 제21조 제1항에 정한 중도해지의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갑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주채무자인 ㉡F의 대표이사였으며 ㉡G의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이므로, 원고에게 각 차량 리스계약에 관한 중도해지 의사표시를 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고, ㉡G의 대표이사 H도 위 중도해지를 추인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리스 약관 제21조 제1항에 정한 중도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고, 갑 6호증의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H이 주채무자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중도해지 의사표시를 추인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④ 자동차리스 약관 제22조 제1항은 “제21조에 따라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규정손해배상금 및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의 부과 근거 및 관련 요율 등을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9항은 “금융회사는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내역을 고객에게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전 설명 또는 정산내역의 통지는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고객이 예측 불가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특히 고객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고객이 중도해지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해당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차량 반납 처리가 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약관 조항에서 정한 사전 설명 또는 정산내역의 통지를 피고 측의 차량 반납 의사가 접수된 후 실제 각 차량 반납 전에 주채무자인 ㉡G 측에 서면, 이메일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예컨대, 대표이사의 문자메시지)으로 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2)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 부분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기

1) 원고는 이 법원의 수차례 석명에도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해지 사유를 리스사용자 요청에 의한

중도해지인지, 월 리스로 2회 연체에 의한 원고의 각 해지권 행사인지, 1차량의 경우는 리스사용자 요청에 의한 중도해지, 2차량은 월 리스로 2회 연체에 의한 원고 측 해지인지 주장이 수차례 변경되고 서로 배치되어 불명확하다. 결국 이에 관하여 원고가 변론에서 진술한 최종 문서인 2024. 1. 8.자 및 1. 15.자 각 참고서면을 기준으로 원고 주장을 선택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위 주장에 관하여 2021. 9. 25. 1회 연체, 2021. 10. 25. 2회 연체를 주장하였다가(2023. 5. 9.자 준비서면), 위와 같이 기존 주장을 철회, 변경하였다.

3) 위 10월분(2021. 10. 25.) 리스료의 경우 2차량 반납일까지 사용일수가 일할 계산되어 리스사용자에게 청구된다고 볼 여지가있으나, 원고 주장은 위 리스계약이 정상 유지됨을 전제로 10월분조차도 월 리스로 전액을 피고 측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 ‘중도 파기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